

제20회 정례회 의사일정

□ 회 기 : 2001. 6. 19(화) ~ 6. 28(목), 10일간
□ 의사일정

일 시	부 의 안 건	비 고
6. 19(화) 14 : 00	※ 개 회 식 1. 제2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.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. 서울특별시장·교육감및관개공무원출석요구의건 4.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·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	
6. 20(수) 10 : 00	1.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(1일차)	
6. 21(목) 10 : 00	1.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(2일차) ※ 본회의 휴회결의 : 2001. 6. 22~6. 27(6일간)	
6. 22(금) ~ 6. 27(수)	○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	본회의 휴 회
6. 28(목) 14 : 00	1. 안건처리	

※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
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(2001. 5.15)에서 동조례를 심의하는 중에 제기된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
- 금일 제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(2001.6.19)에 출석한 운영위원 전원의 서면발의로 제안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동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3. 개정내용에 대하여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근거하여 -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교

육청”으로

- 동법 “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, 교육기관장”을 “제34조 및 제36조의 교육기관장, 교육장”으로 개정하고
-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폐지에 따라 “법제 137조 및 제138”의 규정을 “법제137조”로 정리하고
- 제127회 임시회에서 신설한 동조례 제2조 제8호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,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·출연한 법인뿐만 아니라 민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출자·출연한 법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코자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·출연한 법인의 임원”을 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/4 이상을 출자·출연한 법인의 임원”으로 개정하고자 함.
- 동조례 제2조(범위) 제1항제1호 규정에 “시장” 삽입여부는 -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